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81

발의연월일: 2025. 3. 6.

발 의 자:양부남·강유정·김용민

김한규 · 김현정 · 박수현

박정현 • 안도걸 • 이강일

이병진 • 이해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,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, 이용자는 400 만 명을 넘어가고 있음.

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, 모바일신분증을 체 계적으로 발급·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,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).
- 나. 모바일신분증 위변조 및 사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76조제3항).
 - 1)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(안 제76조제3항제1호).
 - 2) 모바일신분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신분증을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 (안 제76조제3항제1호의2).
 - 3) 모바일신분증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 는 전자문서를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(안 제76조제3항제1호 의3).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)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가진 모바일신분증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발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,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
 - 1의2. 모바일신분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한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신분증을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자
 - 1의3. 모바일신분증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

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모바일신분증의 발급
	등)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
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
	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
	분증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
	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
	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
	된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같
	다)을 발급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모바일신분증
	의 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
	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	<u>으로 정한다.</u>
제76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	제76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
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
에 처한다.	
<u><신 설></u>	1.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
	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
	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
	게 사용한 자

<신 설>

<u><신</u>설>

 1. (생 략)

 2. ~ 5. (생 략)

 ④ ~ ⑥ (생 략)

1의2.모바일신분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한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조작된 모바일신분증을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 자

1의3. 모바일신분증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·전달 또는 사용한 자

1의4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